

<논문>

## 南宋代 여성의 持參財産 所有 實態

남은혜\*

### 목 차

- I. 머리말
- II. 持參財産 준비와 법률의 保護
  - 1. 持參財産의 마련
  - 2. 孤兒에게 남겨진 持參財産과 갈등
- III. 婚姻 後의 持參財産
  - 1. 夫婦 間 지참재산
  - 2. 家産分割 時 지참재산
- IV. 離婚·改嫁 時 持參財産의 처리
  - 1. 離婚의 사정에 따른 持參財産
  - 2. 改嫁와 持參財産
- V. 死後 持參財産의 歸屬
- VI. 맺음말

### [국문 요약]

본고에서는 13세기 후반 중국 남송시대의 판례집인 『名公書判清明集』에 나타난 판례를 중심으로 혼인 시 여성이 가지고 가는 지참재산의 소유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남송시대 사회에서 여성의 재산권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경북대학교 역사교육대학원 석사(one201@naver.com).

남송시대가 되면 딸이 시집갈 때 가지고 가는 지참재산을 위해 딸을 가진 가정에서는 많은 준비를 하였다. 왜냐하면 지참재산은 혼인 후 딸의 재산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혼인 후에 지참재산은 시댁에서 가산분할을 할 때 제외되는 재산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고, 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시댁 식구와의 갈등도 많이 나타났다.

남송시대에는 여성이 이혼을 하거나 개가할 때 지참재산을 여성의 소유로 봐야 하는지 남편의 소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했다. 또한 여성 사후 지참재산을 둘러싼 적자와 서자의 갈등도 나타났다.

[주제어] 지참재산, 혼인, 소유, 이혼, 개가, 死後

## I. 머리말

婚姻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집안의 만남, 결합으로 혼인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에 필요한 많은 돈이 들어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보통 남자 쪽에서는 여자 쪽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었는데, 남자 집에서 여자 집으로 전해지는 재화 등을 중국에서는 聘財라고 불렀다. 이 빙재의 授受는 관습적으로 婚約의 성립을 의미했고, 晉代부터는 혼약의 법적 기준이 되었다. 唐代 이후 법률에는 婚書를 작성하지 않아도 빙재를 받았다면 혼서를 작성하고 私約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 집에서 約婚을 파약할 때는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했다.<sup>1)</sup>

한편 신부 집에서는 신랑 집에 선물을 할 의무는 없었지만 시집가는 딸에게 옷이나 화장품, 패물 등 지참재산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지참재산에는 살림도구, 침구, 예복 등과 같은 혼인도구가 포함되었고 이를 나타내는 宋代 용어는 粧奩, 嫁妝 등이 합성어로서, 또는 각 문자 단독으로 사용되었다. 이들의 문자적 의미는 여자의 몸단장을 위한 도구들 또는 그것을 담은 상자를 나타내는데, 주로 시집간 여성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혼수품 정도를 의미했다.

1) 『譯註 唐律疏議』上「戶婚」第175條 戶婚26 <許嫁女報婚書>.

그러나 국가법이나 禮制에서는 빙재나 지참재산에 대해 그 종류, 액수, 또는 가산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까지 언급하지는 않았다.<sup>2)</sup> 즉 각 가정에서 지출하는 혼인 비용의 절대 액수는 그 가정의 능력에 따라, 또 부모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정했으므로 단순한 여성용 물품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산<sup>3)</sup>을 주기도 했다.

唐代까지는 빙재 즉, 남자 측에서 부담하는 혼인재정이 크다는 불만이 많았다면, 宋代가 되면 여자 측에서의 비용, 즉 지참재산의 부담이 더 컸던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sup>4)</sup> 왜냐하면 신분적 차이가 뚜렷했던 魏晉南北朝, 隋唐 시대까지는 신분적 內婚制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宋代가 되면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교육받은 계층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과거시험을 통해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높은 신분의 가정과 인척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고, 상대와의 신분 차이를 자녀 혼인 때 고액

2) 聘財는 약속을 굳히는 상징적 예물의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종종 실질적 경제가치의 이전, 즉 지불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현금의 형태로 교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빙재가 아주 비싸다고 보고된 지방이 있는 반면에 빙재 없이 혹은 현금을 수수하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고 보고된 지방도 있어서 지방 차가 크다. 대개 여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빙재를 많이 주고, 신개척지에서 빙재를 많이 주며 또한 富戶보다는 貧戶들 간에 고액의 빙재가 요구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빙재가 고액일 때는 분할로 지불한 뒤 완납 후 비로소 아내를 취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정구의 聘財 외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여자의 숙부, 숙모 등 尊屬에게도 남자 쪽 집에서 얼마간의 금액을 보내는 관습이 있고, 이를 받은 존속은 받은 것의 갑절이 되는 가격의 물품을 구매하여 여자의 粧奩에 넣어주기도 하였다. 또한 혼인 후 수년을 지켜 보고 부부가 서로 잘 사는 것을 확인하거나 외손의 탄생을 기다렸다가 토지를 지참재산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Hsiao-Tung, *Peasant life in China: a field study of country life in the Yangtze Valley* (Oxford University Press, 1946)]. 여기서는 시대적 배경이 南宋이니 만큼 兩浙, 江西, 福建을 비롯한 강남 지역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3) 여자는 남자 집에 혼수로 가지고 갈 물품들의 목록을 적었는데, 그 안에는 보석·금·은·진주 등의 패물과 침구·의류 등의 생활 용품, 심지어 田土·屋業·山園 등의 資産까지 포함되기도 했다[仁井田陞, 『支那身分法史』(東方文化學院, 1942)].

4) 北宋代 范仲淹이 義莊을 설립하고 그 경비 지출에 대한 규칙을 마련할 때, 혼인 비용으로 여자는 30貫, 남자에게는 20貫을 할당했다. 再婚인 경우에 여자에게는 20貫을 주지만 남자에게는 주지 않도록 했다. 또 12세기 呂祖謙은 同居共財관계를 지속하는 義居 가정을 위한 규칙을 쓰면서 딸의 결혼에는 100貫을 아들의 결혼에는 50貫을 쓰도록 정했다. 이러한 상황은 宋初 相續法에서 제시한 聘財와 持參金의 비율이 오히려 역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P. B. Ebrey, 배숙희 역, 『중국여성의 결혼과 생활-송대 여성을 중심으로-』(三知院, 2000)].

의 혼인비용으로 보상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귀족가문끼리 혼인할 때라도 그들의 배타적 우월성을 유지하고 또 드러내기 위해서 빙재와 그에 비례하는 지참재산은 갈수록 고액화 되는 경향이 있었다.<sup>5)</sup>

그러나 宋代가 되면 혈통 대신 남자의 능력이 가정의 위세를 결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쟁적으로 官人의 집으로 딸을 시집보내려는 집에서, 또 사대부의 지위를 이유로 여자 집에 고액의 지참재산을 요구하는 가정들이 지참금의 고액화를 주도했다. 아울러 경제와 상업의 발전 속에 흥는 사회적 출세를 위해 더욱 중요해지면서 사회 쉰 계층에까지 혼인비용의 상승 추세가 나타났다.

딸에게 지참재산을 주어서 시집보내는 당시 풍습은 다양한 지적과 반응을 일으켰다. 滋賀秀三과 仁井田陞의 논쟁을 시작으로 柳田節子, 永田三枝, 板橋眞一 등에 이어지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재혼이나 이혼 시에 여성이 지참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그것을 가져갈 수 있다면 이것이 여성의 재산권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장을 제시하였다.

먼저, 딸들과 아내들이 재산에 대해서 권한이 약화되었다는 주장을 한 滋賀秀三은 唐 戶令 應分條의 “諸在夫家守志者 若改適 其見在部曲奴婢田宅不得費用 皆應分人均分”와 明 戶令의 “其改嫁者 夫家財產及原有粧奩 並聽前夫之家爲主”라는 규정을 들어 과부가 수절하지 않고 개가할 시에는 전 남편의 모든 유산과 지참재산 모두를 잃어버리는 것이 고래의 대원칙이라 하면서 다만 南宋 시기 判語에서는 이점이 명료하지 않고 오히려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당시의 일부 識者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6)</sup> 중국학자 朱瑞熙는 송대 여성에게는 일정한 재산 계승권이 있었지만 唐代와 비교해서 감소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당대에 비해 北宋이 낮았으며, 북송에 비해 南宋의 경우에 여성의 재산 계승권이 낮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清代에 이르면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여성의 재산으로 법제적으로

5) 勝山稔, 「宋代の聘財に関する一考察; 高額聘財の推移から見る婚姻をめぐる社會」, 『中央大學文學部アジア史研究』22(1998).

6) 滋賀秀三, 『中國家族法の原理』(創文社, 1967).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던 裝奩田조차 남편의 소유가 되었다고 보았다.<sup>7)</sup> 즉 당대 이후로 재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점차 약해지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조차 낮아졌다고 하는 것이다. 王墨도 같은 방향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정치와 법률상에서 송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이전시대에 비해서 훨씬 낮아졌다고 하였다. 이는 혼인관계와 재산 계승권의 일부인 지참재산에 대한 권리도 감소하였다고 말하면서 그 원인을 朱子學에서 찾고 있다.<sup>8)</sup>

반면에, 딸들과 아내들의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을 지지한 仁井田陞은 이전의 唐代까지와 宋代를 제외한 이후의 시대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지위가 아주 낮다고 하였다, 그러나 南宋 시기에는 여성과 남성이 대등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상당한 지위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여성의 재산권 소유, 특히 지참 재산의 소유가 늘어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sup>9)</sup> 또 柳田節子は 남편이 사망한 후에 그 처가 재혼할 때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전답을 가져가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았다.<sup>10)</sup> 永田三枝는 여성의 재산권에 대하여 唐·宋·明·淸의 흐름 속에서 파악을 시도하면서 재혼 시에 여성이 지참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남송의 특유한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송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이 현상이 원대이후에 금지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柳田節子が 이에 집착하는 것은 滋賀秀三씨의 견해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sup>11)</sup> 板橋眞一은 당시 판어가 지닌 애매성을 지적하면서도 처의 명의를 기록된 계약서의 법적 유효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sup>12)</sup>

기존 연구에서는 여성 지참재산의 소유 권한을 살피기 위해 여성이 改嫁나 歸宗을 할 때 지참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에 부부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 궁

7) 朱瑞熙, 『宋代社會研究』(中州書畫社, 1983).

8) 王墨, 「淺論宋代婦女的社會地位」, 『廣東民族學院學報』 11(社會科學版, 1988).

9) 仁井田陞, 『中國法制史研究』(東京大學出版會, 1961).

10) 柳田節子, 『宋元社會經濟史研究』(創文社, 1994).

11) 永田三枝, 「南宋期における女性の財産權について」, 『法制史研究』 42(1992).

12) 板橋眞一, 『柳田節子先生古稀記念中國の傳統社會と家族』, 汲古書院(1993).

극적으로 자식을 통한 가산의 承繼는 중국가족법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지참재산 역시 여성 자신의 소유 여부와 함께 자식에게 전승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또 여성 개가를 논의하기에 앞서 부부의 이혼 상황이 먼저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혼을 유발한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따른 지참재산 처리가 다르게 나타남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여성 死後 지참재산이 누구에게 계승되는지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여성 사후의 지참재산 처리 문제 역시 중국 가족의 가산 승계와 관계되므로 꼭 다루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남송대 여성의 지참재산 소유 문제와 그 현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한 가정의 여자와 남자가 만나 혼인이 이루어질 때 여자 쪽 집안에서 마련하는 지참재산은 未婚인 딸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는지, 或 미혼인 딸을 두고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에 남겨진 딸의 지참재산은 어디서 마련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혼인 후, 여자가 가지고 간 지참재산은 부부 중 누구의 名義가 되며, 현실적으로 누가 소유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남자 집안에서 가산분할이 행해질 때 부인이 가지고 온 지참재산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생각해 볼 것이다. 부부의 혼인생활이 이어지지 못하고 이혼하게 될 경우에 그 원인을 따져 지참재산은 누구에게 歸屬되는지를 여성이 개가할 경우와 함께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인이 남편보다 먼저 사망하게 된다면 부인이 가지고 온 지참재산은 嫡·庶子 중 누구에게 계승되는지를 南宋代 대표적 판례집인 『名公書判清明集(이하 清明集)』<sup>13)</sup>을 중심으로 알아보

13) 『名公書判清明集』은 13세기 후반 즉 남송후기의 知府·知州·知縣 등과 路의 사법감독관이었던 提點刑獄司를 비롯하여, 提舉常平司의 판결을 모아 놓은 판결집이다. 판결문의 내용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즉 혼인과 상속, 부동산 거래와 채무 등 주로 민사적 분쟁과 관련된 것과 관료와 서리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계된 것, 稅와 役의 부담을 둘러싼 문제, 승려와 군인의 범죄, 호민과 형세호 등과 같은 제지 실력자가 야기한 형사적 사건, 민간의 종교와 종교결사에 관계된 안건 등 당시 지방사회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1차 사료가 전무한 남송시대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구체성이 풍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名公書判清明集』의 판본은 일본의 정가당 문고에서 소장된 소간본이 있다. 이것은 청명집 14卷 전체를 수록한 것이 아니라 戶婚門의 일부에 관한 것만 수록한 잔본고 不分卷이다. 즉

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여성의 지참재산에 대한 전문적인 논문은 발표되어 있지 않다. 송대 여성의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에 따른 女承分<sup>14)</sup> 여성의 再婚 시 발생하는 재산문제<sup>15)</sup> 등의 일환으로서 송대 여성의 지참재산이 부분적으로 논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여성의 지참재산은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가치 있는 분야이다. 특히, 남송대 여성 지참재산 액수의 증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지참재산 소유권 문제는 후대 元·明代에 영향을 주었다. 원·명대가 되면 신부의 가정에서 많은 양의 지참금을 주고 싶어 할 동기를 감소시키고 신부가 지참재산을 소유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남송대 여성 지참재산 소유 문제의 고찰은 지금까지도 대립하고 있는, 중국 역사에서 가지는 宋代 딸의 재산 相續權의 의미나 중국 가족제의 발전과 역동성 여부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sup>16)</sup> 차이를

호훈문의 卷6과 卷7이 누락되고, 卷4, 卷5, 卷8, 卷9를 수록하고 있다. 중국 상해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명간본이 있다. 북경에서는 북경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10卷本이 있는데, 이는 상해도서관 소장본과 동일한 시기에 간행된 명간본이다. 그러나 卷11, 卷12, 卷13, 卷14가 없는 잔본이다. 이러한 刊本을 이용하여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송·요·금·원사 연구실에서는 影印本인 전 2冊을 中華書局에서 1987년 출판하였다. 本稿에서는 중화서국 영인본을 활용하였다.

- 14) 陸貞任, 「宋代 딸의 相續權과 法令의 變化」, 『이화사학연구』 30(2003); 「宋代 分割相續과 家族」, 『동양사학연구』 83(2003).
- 15) 우성숙, 「『名公書判清明集』을 통해 본 宋代 女性의 再婚과 財産問題」, 『法史學研究』 31(2005).
- 16) 仁井田陞의 주장을 따르는 부류는 송대 딸들의 상속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여성의 지위를 긍정적으로 보며 더 나가 종법적 부계원칙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웠던 가족제도를 상정한다. 자연히 중국 가족제도의 초시대적인 지속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다양성과 변화를 중시한다[仁井田陞, 『中國法制史研究 家族村落法』(東京大學出版會, 1962); 袁俐, 「宋代女性財産權述論」, 『宋史研究集刊』 2(1998); 柳田節子, 「宋代女子財産權」, 『法政史學』 42(1990); 大澤正昭, 『南宋の裁判と女性財産權』(青木書店, 2000)]. 반면, 여성이 받을 수 있었던 재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은 滋賀秀三 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다른 연구자들은 송대 딸의 상속법도 그들의 기본적 주장을 동요시킬 만큼 중대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송대 딸의 분할상속을 남송대 일부지역에 국한된 관습 또는 송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이례적인 법으로 생각하므로, 지참금은 물론 분할상속의 의미도 중국 가족제도를 관통하는 일관된 부계 원리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연히 중국 가족사의 역동성보다는 지속성을 강조하며 남송대 딸의 분할상속법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한다[滋賀秀三, 앞의 책; 永田三枝, 앞의 책; 高橋芳郎, 「親を亡くした女たち—南宋期のいわゆる女子財産

좁히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 II. 持參財産 준비와 법률의 保護

宋, 특히 南宋代가 되면 가난한 집이든 부유한 집이든 상관없이 부모의 능력만 된다면 딸의 지참재산을 마련하는데 열심을 다했다. 혼인 시 가지고 간 지참재산의 많고 적음은 그들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말해주는 지표로서 활용되었다. 그리고 혼인 후 딸은 지참재산을 통해 새로운 경제력을 가지고 혼인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딸의 재산형성을 위해서도 지참재산은 꼭 필요했다.

그러나 많은 양의 지참금을 준비해야 된다는 압력의 증대로 딸을 혼인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참금의 급상승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이 딸에게 지참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sup>17)</sup> 이에 복건의 지방관<sup>18)</sup>은 “결혼의 목적은 상속인을 낳는 것이지, 財富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하게 게시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신부를 선택할 때 가족을 중요시하지 않고, 지참금에만 전적으로 마음을 쏟았다.

이처럼 지참재산의 의미와 그 액수가 중요해져 가면서, 부모들은 딸을 위해 지참재산을 준비하고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딸들 역시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 지참재산을 가지는데 소홀하지 않았고, 이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이 왔을 때는 소송도 불사하지 않는 적극성<sup>19)</sup>과 경제관념도 보이게 되었다.

權について, 『東北大學東洋史論集』(1995); Kathryn Bernhardt, *Woman and Property in China, 960~1949*(Stanford Univ. Press, 1999)].

17) P. B. Ebrey, 앞의 책, 172면.

18) 蔡襄(1012~1067)이 福州의 지방관으로 있었을 때 일이다.

19) 송대는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민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소송의 대중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여성도 원고로서 소송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북송 말기부터는 민간 소송에 越訴가 허용되면서 소송권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송의 횡이 생겨날 정도가 되었다. 지참금의 법적 권리와 증가로 딸의 가산 상속권이 커지게 됨에



이번 장에서는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지참재산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 지참재산을 어떻게 준비하고자 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미처 혼인하지 못하고 고아가 되어버린 딸을 위해서 부모가 남겨두는 지참재산과 이 지참재산을 둘러싼 갈등 사례도 살펴보고자 한다.

## 1. 持參財産의 마련

딸이 가지고 가는 지참재산은 혼인의 요건은 아닐지라도 宋代가 되면 혼인 하는 여성의 지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었다. 딸이 쫓이 아닌 妻의 자격으로서 정식 혼인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婚禮를 거쳐 지참재산을 가지고 가는 것이었다. 가족이 딸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며 반대로 가족들이 딸을 소중하게 생각해 많은 재물을 주어서 시집보냈다는 의미이므로 지참재산은 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고 하겠다.<sup>20)</sup>

그리고 지참재산은 혼인 후 딸과 사위의 私財<sup>21)</sup>가 되므로 同居共財<sup>22)</sup>를 理想으로 생각하는 중국사회에서는 지참재산을 부부특유의 재산<sup>23)</sup>으로 여겼고,

따라 그와 관련한 소송의 발생도 많았을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大澤正昭, 『主張する '愚民'たち』(角川書店, 1986)].

20) P. B. Ebrey, 앞의 책, 188면.

21) 딸이 받는 지참재산은 신부 부모의 가산이 신랑의 집으로가 아니라 신부 곧 딸 개인의 소유로 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 남편과 자식 즉 그 딸 부부만의 재산으로서 同居共財하는 시부모나 다른 방계가족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分産되지 않는 私財였다. 이는 아들이 應分親으로서 가산을 분할하면 그 재산은 그 자신, 더 엄밀히 말하면 그의 처와 자녀로 이루어진 독립가정인 戶의 재산으로 귀속된 것과 같다. 지참금은 일차적으로 그녀 개인의 소유로, 궁극적으로는 그녀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의 독립가정의 재산이 되었다(『唐律疏議』卷 12 戶婚, 「卑幼私輒用財物」).

22) 同居共財란 단순히 공동 회계를 유지하는 관계일 뿐 아니라, 공동의 자산 이외에 각 家族員이나 각 房이 私財를 갖지 않고 전적으로 공동경제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共財를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家라는 집단이 곧 하나의 경제 단위가 되도록 하는 제도였다. 생산과 소비를 함께 하는 것 외에 수입을 숨기지 않고 개인재산 축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共財의 기본 규율이며 요구였던 것이다[滋賀秀三, 앞의 책; 남은혜, 「宋代 家族制度에 대한 연구동향」, 『법사학연구』 38(2008), 218면].

23) 滋賀秀三, 위의 책, 496면.

딸을 가진 부모입장에서는 더 많은 지참재산을 주어 딸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혼인 생활을 하기를 원했다.<sup>24)</sup> 더욱이 지참재산 액수의 증가로 여자가 가지고 올 지참금의 규모에 따라 신부를 선택하는 풍조가 생겨나게 되었고, 지참금은 점차 의식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재산 讓與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태를 비판한 많은 宋代 지식인들 중 한 사람인 司馬光의 말을 통해서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요즘 탐욕스럽고 야비한 사람들은 며느리를 들일 때 지참금의 크기를 먼저 묻고, 딸을 시집보낼 때는 빙재의 양을 먼저 묻는다. 어떤 자들은 계약을 할 때, “어떤 물건은 얼마큼, 또 어떤 물건은 얼마큼”이라고 쓰니 이는 딸이 팔려가기를 구하는 꼴이다. 혼례식이 끝난 뒤 합의된 것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 그러나 시부모가 속았을 때는 그 분풀이 방법으로 며느리를 괴롭힐 것이다. 이것이 두려워 딸을 사랑하는 부모들은, 그러한 탐욕스럽고 야비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도 모르고 딸의 시부모를 기쁘게 할 바람으로 후한 지참금을 장만한다. 지참금이 없어질 때는 이런 시부모에게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며느리 친정의 재력은 한계가 있지만 그들의 요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으로 이어진 가정들이 종종 원수로 끝나버린다.<sup>25)</sup>

사마광은 재물의 이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지는 혼인에 불만을 나타내어 이를 경계하였지만, 현실사회에서는 이미 딸을 더 좋은 곳, 더 나은 환경에 시집보내기 위해서라면 지참금의 품목과 규모를 상관하지 않고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여자 집에서는 딸이 시집갈 때 필요한 지참재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 것에 대비해서 딸이 어릴 때부터 미리 지참재산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24) 지참금을 소유한다는 것이 여성의 지위를 높여주고 행동의 자유를 주며, 존경을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가정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옷, 보석 그리고 토지 문서가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심리적인 안정감은 아마도 그 여자가 재산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중요했다[Goody Jack, 연국희·박정혜 옮김, 『중국과 인도의 결혼 풍습 옛보기』(중앙M&B, 1999), 322면].

25) 『司馬氏書儀』卷3, 婚儀上.

중간정도 재산이 있는 집이라면 법사에 일찍부터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딸을 양육함에도 역시 일찍부터 딸의 혼수 의복과 물품들을 저축해두어야 시집을 보낼 때 힘들지 않게 된다. 만약 이런 일들을 치워놓고 생각지 않다가 때에 당하여 급박해진다면 무슨 방도가 있겠는가? 닥쳐서 땅이나 가옥을 팔든지 아니면 딸이 남들 앞에서 수모를 당해도 무정하게 있게 될 뿐이다. … 근래 어떤 사람은 딸이 태어날 때마다 杉나무 1만 그루를 심고 딸이 장성했을 때 삼나무를 팔아 嫁資에 써서 그 딸이 결혼 혼기를 놓치지 않았다.<sup>26)</sup>

袁采는 딸이 가지고 가는 지참금의 비용을 가장 염려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부모는 임시방편으로 땅이나 건물을 팔아야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딸이 사람들 앞에서 수모당하는 것을 냉담하게 바라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또, 딸이 태어났을 때 나무를 심어 잘 키운 뒤, 시집갈 때 이를 베어 팔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딸을 낳아 기를 때 혼인 시 가지고 갈 지참재산을 위해 절약하고 재물을 모으면 시집갈 때에 이르러 고생하지 않는다<sup>27)</sup>고 하면서 훗날 딸이 시집가서 부족한 지참재산으로 인해 모욕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않도록 딸을 가진 가정에서는 지참재산 마련을 위해 미리 준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딸에게 주는 지참재산이 家産의 일부가 될 만큼 고액화 되는 사회 변화로 인하여 딸이 家産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그 일반적인 액수가 미미할 때는 상관없지만, 지참재산의 액수가 커질수록 딸이 간접적으로 친정의 가산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였고<sup>28)</sup> 친정과의 유대관계 역시 높아진다고 보았다. 사실, 지참 재산을 받는다는 것은 국가법의 보호를 받는 여성의 권리<sup>29)</sup>이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송대 사회에서 未婚

26) 『袁氏世範』 卷中, 「事責預謀後則時失」.

27) 高楠, 「宋代家庭中的産産紛糾」, 『中國社會經濟史研究』 3(2004).

28) 高楠, 「宋代家庭中的共有財産紛糾」, 『中國社會歷史評論』 8(2007).

29) 『宋刑統』 卷12 戶婚律 「幼私輒用財物」.

의 딸을 위한 지참재산의 준비는, 딸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지게 되는 상속 지분의 상승과 그로 인한 家內에서의 위상, 지참금의 규모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경제관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2. 孤兒에게 남겨진 持參財産과 갈등

점차 많은 지참금이 요구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모 생전에 혼인하는 딸의 경우는 부모들의 재량으로 지참금을 마련하겠지만 父母가 사망하였거나 혹은 父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딸의 지참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답을 먼저 말하자면, 부모를 여의거나 아버지만 사망하였어도 딸은 여전히 지참금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가산을 분할 할 때 전택 및 재물을 형제가 균분한다. ... 처의 지참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 아직 처를 맞지 않은 자에게는 장래 聘財에 충당하기 위한 재산을 특별히 주라. 고모나 자매가 미혼인 경우 미혼아들에게 빙재용으로 주는 액수의 半을 준다...<sup>30)</sup>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형제가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형제들이나 또는 결혼하지 않은 고모가 있을 때, 재산이 분할되기 전에 그들의 결혼비용은 따로 떼어 놓았다. 南宋代 법문에는 “父母已亡 兒女分産 女合得男之半”<sup>31)</sup>이라는 것이 있었다. 법문에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이 법은 고아가 된 딸이 남자형제들이나 삼촌들, 그리고 다른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재산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보호받고, 반드시 지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배려에서 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참금은 그 비중이 커지고 여성의 혼인에 필수적 요소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법의 보호를 받는

30) 仁井田陞, 『唐令拾遺』(東京大學出版會, 1964).

31) 『名公書判清明集』 卷8 戶婚門, 分析「女壻不應中分妻家財產」.

여성의 권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를 다른 어떤 방해물로 지켜 내어 지참금을 받아야 할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할 당위성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에 법에 호소할 수도 있었으므로,

孤女에게 가산의 지분이 있을 때 반드시 능력에 맞춰 厚한 嫁資를 주어 시집보내야 한다. 田産을 주어야 할 때는 반드시 法條에 따라 주어야 한다. 만약 당장만 생각하여 인색하게 한다면 시집간 후에 반드시 고소를 할 것이다.<sup>32)</sup>

라고 하였다. 袁采는 부모 사망 후에 출가하는 여성의 지참재산을 법대로 주어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사실 부모를 여윈 딸들이 지참금을 받지 못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을 기록한 것<sup>33)</sup>이나, 고아가 된 조카 몫의 지참재산을 돌려싼 고소사건은 확실히 드물지 않았다. 하나의 예를 보면, 해여림이 오랑개의 침입으로 죽자 고아가 된 칠고와 그의 딸 수낭은 해근(해여림의 조카)에게 맡겨졌다. 해근은 해여림의 토지를 위임받고 관리하면서 생업을 주관하게 되었는데, 그러는 동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칠고와 수낭의 혼인을 진행시키지 않았다. 특히 수낭은 왕씨 집에서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지만, 해근은 수낭의 혼인을 위해 남겨진 토지가 욕심이 나서 왕씨와의 혼약을 지키려 하지 않았고, 이에 소송이 일어난 것이다. 결국 해여림의 재산은 칠고와 수낭의 결혼 비용으로 남겨두고 이를 관에서 관리하기로 하였다.<sup>34)</sup>

한편, 南宋代 錢居茂라는 사람은 자신의 유언장 속에 가산의 일부를 딸의

32) 『袁氏世范』 卷上, 「孤女財産隨嫁分給」.

33) 유부(劉釜, 1040~1113)는 『靑頰高議』에서 어떤 관료의 딸에 대한 예를 기록했는데, 왕경노(王瓊奴)는 호사스러운 생활에 익숙해 있었고, 자수를 놓을 수 있었으며, 시를 지을 수 있었다. 그녀가 10대 중반이었을 때, 아버지가 관직에서 해임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죽었다. 그런데 경노의 큰 오빠와 올케언니가 대부분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렸다. 그래서 경노가 가난해졌으므로 약혼자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다. 경노와 함께 남게 된 나이든 종이 그녀를 설득해서 어떤 부유한 관원의 첩이 되도록 했다. 유부는 그 후 경노가 꺾어야 했던 고통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관리의 본부인에게서 항상 매를 맞았다고 한다.

34) 『名公書判清明集』 卷8 戶婚門, 女承分 「處分孤遺田産」.

지참재산으로 남겨둔다고 밝혔지만 그의 族人들은 이를 가지기 위해 다투며 소송한 사건이 있다. 하지만 관청에서는 전거무의 유언과 딸의 권리 보호를 이유로 죽인들이 잘못하였다고 판결하였고, 가산의 일부는 딸이 지참재산으로 받아야 할 몫임을 인정하였다.<sup>35)</sup> 또 다른 예로는, 吳革의 양자인 吳錫이 養父의 가산을 모두 典賣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오혁이 딸을 위해 남겨둔 재산인 지참재산 역시 모두 팔아버린 사건이 있었다. 이 때문에 오혁은 杖刑 100대에 처해졌고, 팔아버린 재산을 전부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sup>36)</sup>

이처럼 다른 종류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지참금 역시 쉽게 불화를 일으켜 親族을 원수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딸이 미처 혼인하지 못하고 고아가 되었거나 그 권리를 지킬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처했을 지라도 딸이 가진 지참재산권은 법률로 보호받았다. 孤女의 혼인이 이루어 질 때는 그녀의 부모가 남겨둔 지참재산을 꼭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송대 여성의 지참금은 단순히 혼수로서의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친정의 가산이 딸에게 傳承되는 하나의 통로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婚姻 後의 持參財產

부모 생전에 혼인을 하였든, 부모 사망 후에 부모가 남겨둔 지참재산으로 혼인을 하였든, 딸이 시집갈 때 가지고 간 지참재산을 짠 띠는 媵宅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지참재산과 시집 재산이 불완전하게 합쳐진다는 의미로 작용하였는데 원칙적으로 딸, 그러니깐 시집 온 며느리는 자신의 지참재산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sup>37)</sup> 그러나 南宋代는 그 어느 시기보다 유교적 질

35) 『名公書判清明集』 卷6 戶婚門, 爭山「爭山」.

36) 『名公書判清明集』 卷4 戶婚門, 爭業上「吳盟訴吳錫賣田」.

37) 郭麗冰, 「宋代婦女產權的探求」, 『廣東衣工商職業技術學院學報』 21(2005).

서와 원리를 중요시하였고, 三從四德<sup>38)</sup>이라 하여 여성의 순종적 태도와 남성을 향한 복종의 미덕이 있는 자 편안한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지참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다 하여도 전통적 男尊女卑 사상이 강했던 현실 속에서 여성의 지참재산권이 효과적으로 잘 지켜졌을 지는 의문이다.

이번 장에서는, 혼인 후 여성의 지참재산은 부부간에 누구의 명의로 관리되고 유지되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시집에서 家産分割을 행할 때 지참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지와 가산분할 후 여성 지참재산을 둘러싼 시댁 식구와의 갈등사례도 소개하고자 한다. 혼인을 통해서 지참재산에 대한 여성의 소유와 권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부부사이와 시댁의 가산분할 시기에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 1. 夫婦間 지참재산

딸들에게 지참재산을 주는 것은 많은 사회에서 보편적인 관례였다. 그러나 婚姻한 여성 자신들의 지참금에 대한 사용권과 처분권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다. 르네상스 시기 플로렌스지역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지참금을 관리하여 일상적인 가사에 드는 비용에 사용했다. 일찍이 근대 영국에서는 남편이 아내가 지참금으로 가져온 현금, 가구, 그리고 다른 動産에 대해서 전적인 권리를 행사했다. 서북 인도에서는 최근까지도 신부의 시부모는 가족 성원들에게 며느리가 지참금으로 가져온 물품을 나누어 주며 신부와 신랑에게는 단지 일정한 몫만을 주었다. 근대 그리스의 여성들은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가져온 땅을 일생동안 자신이 통제할 수 있었다.<sup>39)</sup>

38) 『儀禮』에서 여자가 출가하기 전에 아버지를 따르고(在家從父), 출가해서는 남편을 따르고(適人從夫),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는 것(夫死從子)을 三從이라고 하였고, 『周禮』에서 부녀의 덕(婦德), 부녀의 언행(婦言), 부녀의 용모(婦容), 부녀의 솜씨(婦功)를 四德이라 하였는데, 훗날 이를 여인이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삼아 三從四德이라 하였다.

39) Klapisch-Zuber, Christiane, *A history of women in the West*(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婚姻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하나의 단위로 만드는 것이다.<sup>40)</sup> 그렇기 때문에 남성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宋代의 혼인생활에서 남편은 아내의 법적인 대표자요 주인이 된다. 물론 지참재산이라는 것이 법률상의 규정이야 어찌하였든 적어도 당대부터 청대까지 실질적으로는 처 개인의 재산으로 인식되었다고 파악하는 경우<sup>41)</sup>도 있다. 그러나 지참재산이 여자가 시집갈 때 시택에 가지고 들어가는 재물이라는 의미 외에 그 재물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혼인생활이 존속되는 동안 지참재산에 대한 아내의 권리는 남편에게 흡수되게 되었다. 법에서도 “부인의 재산은 모두 남편과 공동으로 소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부부를一體로 파악하는 연장선에서 부부의 재산도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sup>42)</sup> 그러므로 혼인 후 아내가 가지고 온 지참재산은 남편과 공동 소유가 되므로 남편의 소유가 된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참재산의 처분 역시 남편이 행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애당초 지참재산인 토지는 남편의 명의로 보유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又自隨之產不得立女戶 當隨其夫戶頭 是爲夫之產矣”<sup>43)</sup>라고 하여 지참재산을 부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不許하며 남편을 명의로 남편의 재산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남송시대에 이미 그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아내의 돈으로 토지를 사는 경우에도 토지의 명의로 남편으로 하였다. 토지 그 자체를 지참시키는 경우에도, 명의상으로는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는 이상 처분도 남편에 의해 행해진다. 『清明集』에 있는 판결문에서도 “남편 스스로 그 아내의 粧奩田을 저당 잡힌 것은 즉 바르게 행해진 交關이라”<sup>44)</sup>고 한 것 역시 남편에 의해 지참재산의

~1994); Goody Jack, 앞의 책, 231면.

40) 滋賀秀三, 앞의 책, 500면.

41) 邢鐵, 『家產繼承史論』(雲南大學出版社, 2000).

42) 『名公書判清明集』 卷5 戶婚門, 爭業下 「妻財置業不係分」.

43) 『黃文肅公文集』 卷40, 「郭氏劉拱禮訴劉仁謙等冒占田產」.

44) 『名公書判清明集』 卷5 戶婚門, 爭業下 「妻財置業不係分」, “自典其妻裝奩田 乃是正行交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참재산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아내가 가지고 온 지참재산은 거의 남편을 위해 사용되었다. 보석을 지참금으로 가지고 온 劉氏는 남편에게 책과 書畫를 사주기 위해서 보석을 팔았다고 한다.<sup>45)</sup> 또, 長氏 姓을 가진 어떤 부인은 자기가 지참금으로 가져온 토지 중에 5묘를 팔아 남편의 남자 형제의 첫 번째 부인이 죽은 후, 두 번째 부인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대주기 까지 했다고 한다.<sup>46)</sup>

또한, 宋代 朱子學者들은 아내들이 지참금을 제사, 장례, 또는 남편의 형제들의 결혼식과 같은 광범위한 가정의 목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劉宰는 여성들이 천성적으로 인색하다고 생각했지만, 趙氏 悟眞은 자기가 시집을 때 가져온 많은 지참금과 토지를 모두 남편에게 주었으며 이와 관련된 수입과 지출의 계산에는 전혀 관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외적인 인물이라고 칭송했다.<sup>47)</sup> 司馬光도 역시 妻가 지참금을 사유재산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sup>48)</sup>하면서 “처는 자기 자신의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개인적인 저축도 없어야 하고, 사유물도 없어야 한다”<sup>49)</sup>는 구절을 즐겨 인용했다. 즉, 부부간에는 재산에 대한 여성들의 권리 주장을 배척하고 父系의 원칙을 고양시키기 원했으며, 가정이라는 곳에서는 가부장 중심의 원칙을 근거로 두길 원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오랜 역사에서 볼 때 南宋代 지참재산은 다소 이례적인 형태의 재산이었다. 그 재산은 부인의 이름 下에 독립된 재산으로 등기되지는 않았지만 여자의 지참금 재산으로서 분명하게 분류되었고, 소유권 또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가 내세우는 지참재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夫婦一體의 원리에서

45) 大澤正昭, 「劉後村の判語 - 『名公書判清明集』と『後村先生大全集』」, 『중국사연구』54(2008).

46) Birge, Bettine, *Woman, property, and confucian reaction in Sung and Yuan China(960~1368)*,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47) 『戒子通錄』卷6 「高司業送終禮 戒子篇」.

48) 『司馬氏書義』卷4, 婚儀下.

49) 『禮記』內則 第12 “子婦無私貨, 無私畜, 無私器”.

남편을 상대로 할 때 가장 무력했다. 심지어 어떤 부녀자들은 자신의 지참재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간에 남편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도 했다.<sup>50)</sup> 아내는 지참재산과 관련하여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인 처지에 있지 못했고, 어떤 보호를 받기 위해 법정에 갈 수도 없었다. 남송 시대 대표적 판례집인 『清明集』에 아내가 자기의 허락 없이 시집을 때 가져온 재산을 팔아버린 남편을 고소한 예가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sup>51)</sup>

아무리 지참재산이 처 개인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여성에게 불리한 법률제도와 전통적 女必從夫 사상 등이 만연한 시대적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로 말미암아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들의 지참재산은 좀 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권리에 의해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재산권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 2. 家産分割 時 지참재산

전근대 중국에서는 同居共財하는 단위를 家, 즉 생활 공동체의 최소 단위로 자 법률적 가족단위로 인식하고 그 경제기반을 공동의 家産으로 인식했다. 家父가 死亡하거나 형제 중 누가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共財 관계가 저절로 解消되는 것이 아니었다. 동거공재 관계의 단절은 그 관계의 근거가 되었던 同籍과 異財를 해제하는 행위인 家産分割에 의해서만이 비로소 가능하였다. 宋代 家産分割의 원칙은 唐습에 있는 戶습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 법으로 정하였다.<sup>52)</sup> 이는 전근대 중국 相續制度의 기본적 원리로서 송대 뿐 아니라 역대 왕

50) 郭麗冰, 앞의 논문, 57면.

51) P. B. Ebrey, 앞의 책, 183면.

52) ① 분할한 田宅 및 財物을 兄弟는 均分한다(祖父의 사망 후 각자 異居하고 同爨하지 않은지 3載 이상 경과한 때, 또 逃亡하여 6載 이상 經過한 자는, 만약 父祖로부터의 오랜 田宅·邸店·碾磑·部曲·奴婢 등에 현재 남아있어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마음대로 分割을 다시 주장할 수는 없다). ② 妻家로부터 받은 재산은 분할하는 범위에 들지 않는다(妻가 사망했다 하여도 소유했던 資財 및 奴婢를 妻家에서 결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③ 兄弟 가운데에 사망한 자는 그 자식이 父親의 몫을 승계한다(繼絶子도 역시 같다). ④ 兄弟가 모두 사

조의 상속법도 이에 근거하여 거의 바뀌지 않았다.

먼저 분할 상속의 목적물인 재산의 범위를 살펴보면, 田土, 家屋, 商店을 포함한 부동산, 방이나 맷돌을 포함한 생산과 가공을 위한 도구들, 그리고 예속된 인력 등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종류가 포함되었다. 이것은 祖父나 父親에게 속해있던 世襲財產 또는 祖父傳來產에 한정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家財·家業·衆財·父財 등으로 칭해졌던 同居共財 가정의 공동재산을 의미했다. 그러나 世襲財產이 아닌 기타 재산은 분할의 대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소위 私財라고 불리며 형제 각자에게 專屬된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妻家所得之財 不在分限”<sup>53)</sup>이라고 하여 妻가 자신의 친정에서 지참 재산 등의 명목으로 가지고 온 재산은 분할 재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즉, 처가의 입장에서 보면, 딸 夫婦만의 재산으로서 同居共財하는 시부모나 다른 傍系 가족들이 있다 하더라도 分產되지 않았던 것이다. 더 엄밀히 말하면, 남편과 妻,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독립가정인 房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참금은 일차적으로는 처 개인의 소유로, 궁극적으로는 처와 자녀들 그리고 남편 명의의 독립가정의 재산이 되었다.<sup>54)</sup> 사정이 이렇다보니 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지참재산을 두고 시댁 식구와의 갈등도 나타났다.

진규는 아들 진중용과 며느리 채씨를 고소했는데,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질 권리가 있는 토지인 衆分田을 몰래 전당잡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확실히 조사해서 증명해 보니 중용이 전당잡힌 토지는 부인 채씨가 결혼할 때 가지고 온

말했다면 그들의 자식들 간에 균분한다(父祖의 永業田 및 賜田 역시 均分한다. 口分田은 丁中老小法에 준한다. 토지가 부족하다면, 역시 본법에 의해 나눈다). ⑤ [형제 가운데] 아직 妻를 맞지 않은 자에게는 장래 聘財를 별도로 준다. 姑母나 姊妹가 미혼인 경우 미혼아들에게 주는 聘財의 半을 준다. ⑥ [사망한 형제의] 寡妻妾으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남편의 冢을 승계하게 한다. 만약 남편의 형제가 모두 사망했다면 (그들의) 아들 한 명의 冢과 동일하게 준다(아들이 있으면 따로 [寡妻妾의] 冢은 주지 않는다. 여기서 [寡妻妾은] 夫家에 남아 守節하는 자를 말한다. 만약 改嫁하였다면 현재 가진 部曲·奴婢·田宅 등은 사용할 수 없고 모두 應分人들이 均分한다). (『唐書拾遺』 戶令 第27條 「分田宅及財物」; 『宋刑統』 卷12 「卑幼私用財」 附 分異財產).

53) 『宋刑統』 卷12 戶婚律 「幼私輒用財物」.

54) 『名公書判清明集』 卷9 戶婚門, 取贖 「孤女贖父田」.

지참재산을 가지고 매입한 것으로, 妻가 친정에서 가지고 온 재산으로 시집가서 사들인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sup>55)</sup> 이것은 남편과 남편의 형제들로 구성된 대가족 공유재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부부 공동 소유의 재산으로 가산분할 시 처가 가지고 온 재산은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장남 범희보와 그의 부인, 아들이 죽었으므로 희보를 위해 후사를 세워야 하지만 그의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희보의 제사를 모시기로 하였다. 이 때 희보 소유의 토지는 희보의 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땅으로 삼고, 희보 처가 가지고 온 지참재산도 蒸嘗田<sup>56)</sup>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sup>57)</sup> 이 사례에서도 처의 지참재산은 처가 가지고 온 것으로, 남편의 부친 혹은 형제들간의 공동재산에 넣을 수 없는 개인재산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부부만을 위한 제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합법적 私財로 인정된 처의 지참금을 명목으로 자신의 富를 共財에 넣지 않으려고 金銀 등 動産으로 취해 登記를 피하거나 妻家나 姻戚 또는 妻의 명의를 이용하여 가산분할 시 불법적으로 사재를 취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사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저한 共財 가정에서 처의 지참재산은 공식적으로 부부만이 소유할 수 있는 특별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악 이용하여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당시에 많았음을 예상할 수 있다.

사람 중에 兄弟子姪이 동거하는데 私財를 혼자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分析하게 될 일을 염려하여 金銀을 사서 깊이 감추는데 이는 크게 어리석은 일이다. ... 또 衆財를 竊盜하여 처가에 기탁하거나 內外姻親之家에 기탁하여 끝내 그 사람이 써버려도 감히

55) 『名公書判清明集』 卷5 戶婚門, 爭業下 「妻財置業不係分」.

56) 무릇 군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卒哭 뒤에 선조의 사당에 合祀를 하고 조상의 사당에 합사를 하고 나서 신주를 마련하여 특별히 제사를 지내고,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땅으로 겨울제사를 蒸, 가을제사를 嘗, 여름의 제사를 掃라 한다(『左傳』 僖公 33年條 “凡君薨, 卒哭而祔, 祔而作主, 特祀於主, 蒸嘗禘於廟”).

57) 『名公書判清明集』 卷8 戶婚門, 立繼類 「嫂訟其叔用意立繼奪業」.

조사도 하지 못하고 조사하더라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妻 이름으로 置産하기도 하는데 사망 후 妻가 改嫁하면서 自隨田으로 가져가 버리는 경우 역시 많다. 따라서 모든 군자들은 이것을 거울삼아 주의해야 한다.<sup>58)</sup>

실제로도 袁采는, 자신의 소득을 장차 형제 자매가 함께 분할하게 될 共財家産에 넣지 않고 私財로 보유하기 위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말해 주고 있다. 이리하여 南宋 정부도 合法的 私財의 범위를 확대해 승인하였다. 그리고 원래 분할대상에 넣지 않고 私財로 취할 수 있는 것은 妻財産 뿐이었으나 개인적인 능력으로 취득한 재산도 妻産의 명목을 빌리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本人 또는 本房의 소유로 할 수 있게 되었다.<sup>59)</sup> 이는 同居共財 가정에서 특별재산으로 간주하였던 처의 지참재산을 시작으로 私財로 인정되는 재산이 늘어가게 된 것을 말해준다 할 수 있다. 別籍異財의 禁令에도 불구하고 異居, 分析이 早期化 되는데 지참재산이 큰 역할을 하였다 말할 수 있겠다.

지참재산은 결국 남편의 재산에 포함되게 된다. 이것을 특별 재산으로 간주하여 구별하는 것은 남편과 그 부모 형제를 포함하는 家에 대해서였지, 결코 남편 개인에 대해서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처의 재산은 夫家の 전체 가산에서는 제외되는 私財로 인식되었으나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공동 소유로 하는 법령과 南宋의 사회적 분위기에 있어서 전적으로 여성 개인 소유가 되기는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 IV. 離婚·改嫁時 持參財産의 처리

예로부터 君臣·父子·夫婦를 인륜의 三綱이라 했다. 그 가운데 부부는 義에 의한 결합이란 점에서 군신과 유사하다. “군신이 義가 있으면 습하고, 義가

58) 『袁氏世範』卷上, 「同居不必私藏金寶」.

59) 川村康, 임대희 옮김, 『宋代에 있어서의 養子法』(서경, 2005), 147면.

없으면 헤어진다”<sup>60)</sup>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부부도 또한 “부부의 道는 義가 있으면 바로 습하고, 義가 없으면 바로 헤어진다”<sup>61)</sup>고 전해지고 있다. 부부간에도 서로 간에 지켜야 할 義가 있고 이것이 깨지면 부부의 인연도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내는 부부의 지위에 있는 한 가산에 대해 침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적당한 사유가 있다면 義絶, 즉 廢除·離婚<sup>62)</sup>이 가능했다.<sup>63)</sup>

이번 장에서는 의절의 개념과 통하는 부부의 이혼과 여성의 개가 대해 다룰 것이다. 먼저 부부의 이혼에는 그 원인을 따져 지참재산의 처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이혼 후 여성이 수절하지 않고 개가가 이루어질 때 전부에게서 낳은 자식이 여성의 지참재산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볼 것이다.

## 1. 離婚의 사정에 따른 持參財産

宋代 이혼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의사에 따라 성립되었는데, 남편은 아내의

60) 『禮記』「曲禮下」“君臣有義則合 無義則離”.

61) 『漢書』「孔光傳」“夫婦之道 有義則合 無義則離”.

62) ① 협의이혼: 부부의 협의의 내지는 남자 쪽 집과 여자 쪽 집의 협의에 의한 이혼은 자유이며, 여기에 법은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이는 고금을 통하여 변함없는 중국법의 일관된 입장이자. ② 남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이혼: 그럴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은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이혼의 당부를 판단하는 준거로서 예로부터 예제에서 유래된 七出·三不去라는 민간의 상투어가 존재하고, 법도 또한 이를 원용한다. 七出이란 無子, 淫佚, 不事舅姑, 口舌, 盜竊, 妬忌, 惡病이라는 일곱 가지를 말하며, 아내가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때 남편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三不去란 아내가 시부모 상을 다 치렀을 경우, 빈천할 때 아내를 취하여 현재 부귀해진 경우, 아내가 돌아갈 친가가 이미 없는 경우라는 세 가지를 말하며,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면 七出的 이유가 있더라도 이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七出 가운데에서도 특히 아내가 간음을 범한 때는 三不去와 상관없다는 것이 소위 七出·三不去의 내용이다. ③ 아내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이혼은 일절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재판에 의한 이혼: 남편이 아내의 조부모, 부모를 구타하거나 아내의 외조부모, 백숙부모, 형제자매를 죽였을 때, 부부의 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백숙부모, 형제자매가 서로 상대방을 죽였을 때, 아내가 남편의 3종형제(總麻) 이상의 친족과 간음하거나 남편이 아내의 모친과 간음했을 때 및 아내가 남편을 해하고자 했을 때, 이를 義絶이라 칭하고 부부는 강제적으로 이혼을 명령받으며, 명령받고도 이혼을 하지 않을 때는 처벌해야 한다(『譯註 唐律疏議』中「各論編」第189條 戶婚40 <妻無七出>).

63) 陳顧遠, 『中國婚姻史』(上海書店, 1987).

하늘이라는 귀결로서 남편 쪽에서 부부의 의를 끊을 수 있었다. 이혼은 아내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고, 일방적 의사에 의한 이혼은 아내에게 허락조차 되지 않았다.

남편에게는 처를 내쫓는 이치는 있으나 처가 남편을 버리는 조문은 없다.<sup>64)</sup>

무릇 처·첩이 합부로 떠나는 경우에는 도형 2년에 처한다. 이로 인해 개가한 경우에는 2등을 가중한다.<sup>65)</sup>

『清明集』과 당률에서도 이혼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혼은 남편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이혼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도망치거나, 게다가 다른 남자에게 개가를 한다면 법은 엄중히 이를 처벌하고 본인은 남편에게 돌려보내었다. 아내 쪽에서 먼저 義絶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끊는 자는 어디까지나 남편이었다.

이혼했을 경우에는 事情을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먼저, 아내에게 간통 등 현저한 죄과가 있어 이혼이 이루어진 때는, 남편이 이혼서를 주고 단순히 아내를 내쫓기만 하면 되었다.<sup>66)</sup> 이때 지참재산 역시 쫓겨나는 아내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아내나 그 친구가 통상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아내의 지참재산은 결국 남편의 소유가 되어버린다. 한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

蔣興哥는 아내 三氏의 간통에 대한 확증을 잡고 이혼하였으나 은애의 정을 참기 어려워 그녀에게 지참재산인 節籠 16개를 봉한 채 열쇠까지 갖추어 보내주었다. 이들 안 사람들 중 혹자는 興哥의 사람됨이 충후함을 높이 칭찬하였고, 혹자는 바보라고 비웃었고, 혹

64) 『名公書判清明集』 卷9 戶婚門, 婚嫁 「妻以夫家貧而仳離」.

65) 『譯註 唐律疏議』 上 「戶婚」 第190條 戶婚41 <義絶離之>.

66) 『慶元條法事類』 「戶令」, “諸婦人, 犯姦, 非義絶, 并與夫之總麻以上親, 姦未成, 離與不離, 聽從夫意. 被夫同居親强姦, 雖未成, 而妻願離者, 亦聽”.

자는 폐기 없다고 욕했다. ... 이 사건은 기이한 이목을 끌었다.<sup>67)</sup>

장흥가는 간통한 아내 삼씨와 이혼을 하였다. 그러나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장씨는 아내에게 지참재산을 돌려주었고 주위에서는 장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기이한 사건으로 남게 되고 있다. 아내의 간통이 이혼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참재산까지 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인에게 자신의 지참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七出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사유가 있다면 자신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을 억울하다 생각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잘못이 있어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신의 지참재산을 가지고 남편과 이혼할 권리는 없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반대로 남편 쪽에 죄과가 있어서 재판에 의해 이혼을 命받은 경우에는 어떠하였을까. 南宋에서는 특별히, 남편 또는 남편 家의 사람으로부터 정조에 관련된 침해 받은 경우와 남편이 죄를 범해 離鄉하여 編管<sup>68)</sup>된 경우에 한해 처가 이혼을 신청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죄를 범해 編管된 임신중은 6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법에서는 이를 정당한 이혼사유로 생각하였고, 이에 탁오저가 임신중에게 시집갈 때까지 45관을 가져가게 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돌려받고자 임신중이 고소를 한 사건이다. 탁오저는 이혼시 자신의 지참재산을 가지고 나왔으며 개가까지 하게 되었다.<sup>69)</sup> 즉, 남편에게 죄가 있어 이혼을 명받은 경우에는 아내가 자신의 지참재산을 일률적으로 포기해야 한다고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67) 洪邁, 임국웅 역, 『경세지략』(백서스, 2003), 96면.

68) 編管은 刺字를 하지 않고, 죄인을 외지로 보내서 그곳의 戶籍에 편입시켜서 官府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형벌이다. 이를 적용하는 범위는 매우 넓었는데, 관리들의 贓罪 가운데 사형에 이르는 경우, 재판을 잘못하여 死罪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수에 연좌된 가족들에게 이 형벌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辻正博, 「宋代編管制度考」, 『東洋史研究』 61-3(2002)].

69) 『名公書判清明集』 卷9 戶婚門, 離婚 「已成婚而夫離鄉編管者聽離」.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할 때에는 妻가 지참한 재산만은 유일하게 처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부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현저한 죄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不和 때문에 이혼한 경우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모든 조건은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데, 당연히 이혼을 제의하여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한 쪽이 협의를 할 때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현저한 죄과까지는 아니더라도 파국을 가져오는 데 얼마간 자기의 실수가 있었음을 자각하는 쪽이 역시 약자의 입장에 선다. 그리고 적당한 제3자가 중간에 서서 모든 것을 감안하여, 약자의 입장에 선 자에게 일정한 돈을 내게 함으로써 협의를 이끌어내게 된다.<sup>70)</sup> 지참재산도 협의에 의한 결정에 당연히 따라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혼은 남편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불화로 이혼할 때 아내는 지참재산을 가지고 떠난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고 있다 하겠다.

이혼은 아내가 먼저 요구할 수 없었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송시대에는 아내 쪽에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는 잘못이나 흠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남편이 出外해서 3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거나 불화로 인해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한 때에는 부인에게도 이혼의 기회가 주어졌다. 물론 이혼이 성립하더라도 어떤 경제적 뒷받침이 보장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부인이 혼인 시 가지고 간 지참재산만은 부인의 몫으로 주어졌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改嫁와 持參財産

한편, 과부가 된 아내가 죽은 남편과의 義를 끊고 改嫁하는 것 또한 이혼과 유사한 효과를 낳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었다. 祭祀와 家産을 둘러싼 사법상의 여러 권리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개가는 이혼과 다름이 없었고,<sup>71)</sup> 이때에도 아

70) 滋賀秀三, 앞의 책, 471면.

71) 陳顧遠, 앞의 책, 233면.

내의 지참재산은 특별 취급 받지 않고 남편의 인격에 흡수되어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

부부일체란 인위적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파탄의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가능성은 통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되며 부부일체의 관계는 안정을 더하게 된다. 안정도를 더해감에 따라 지참재산에 대한 구별의식은 감퇴되고 房의 재산으로서 남편 쪽에 합류되는 의식이 강화되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참재산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자연히 이혼할 때보다 개가할 때 더 곤란해질 것이다. 唐代 俗에서도 과부가 개가할 경우 지참재산을 가지고 갈 수 없도록 규정했다.<sup>72)</sup>

그러나 南宋代 판결문에서는 이 점이 명료하지 않다. 지참재산을 가지고 본가로 가거나 개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단지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그 예를 보면,

徐孟彝의 아내 陳氏는 夫의 사망 후, 시어머니와 1남 3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가의 父親과 오빠의 시주를 받아 자녀를 버리고 粧奩을 가지고 친가로 돌아가 버렸다. 이에 대하여 徐家에서 그 불법을 고소하였다. 진씨는 徐家로 돌아오고 田은 徐家の 것으로서 그 수익을 자녀의 양육비로 충당하라고 판시되었다. “만약 徐家에 있어 子息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진씨는 그 田을 취하여 자기 것으로 해도 좋으리라. 자녀가 넷이나 있는 이상, 당연 그 田을 諸子에게 나누어야 하며 그 田을 취하고 諸子를 버려도 좋다는 도리는 없다”하였다.<sup>73)</sup>

서맹이와 처 진씨 사이에는 1남 3녀가 있었다. 서씨가 죽자, 진씨는 자식들을 버리고 자신이 시집갈 때 가지고 간 粧奩만을 들고 자신의 친가로 돌아갔다. 이에 서씨 집안에서 진씨가 가지고 간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고소한 사건이다.

72) 『名公書判清明集』 卷9 戶婚門, 違法交易 「已出嫁母賣其子物業」.

73) 『黃文肅公文集』 卷40, 「徐家論陳家取去媳婦及田產」.

이 사건의 판결을 맡은 黃幹은 자식이 있을 때는 여성이 가져간 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식이 없는 과부가 친정으로 돌아갈 때는 자신의 지참금을 가져갈 권리를 인정해 주고, 책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아내가 개가할 때 자신의 지참재산이 절대적으로 남편이나 시댁 優位의 소유가 아니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자식이 없다면 오히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南宋代에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가할 때에, 지참재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다른 견해도 보인다.

장여림은 아버지 장삼이 죽으면서 남긴 토지를 장삼의 후처 섭씨와 섭씨의 오빠 섭십을수가 마음대로 처분하였다고 고소하였다. 살펴보니 섭씨는 자신이 낳은 귀낭의 결혼지참금으로 얼마의 토지를 삼았고, 섭씨 자신이 시집을 때 가지고 온 토지를 노후자금으로 삼았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차례차례 판 장여림이 귀낭의 결혼지참 몫으로 돌아간 토지와 섭씨가 시집을 때 가지고 온 토지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sup>74)</sup>

이 사건을 맡은 판관은 귀낭이 받은 토지는 당연히 귀낭의 것으로서 결혼지참금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하였다. 또, 섭씨가 시집을 때 가지고 온 토지를 노후자금으로 삼는 것은 좋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섭씨가 토지를 지참하여 개가하는 것은 불허하고 있다.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sup>75)</sup>는 도리에 의해 결혼지참금으로 가져온 재산도 남편 집안의 토지로 보고 이것 역시 아들에게 전승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개가할 때는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가지고 온 재산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판결인 것이다.

元·明代가 되면 지참금에 대한 여성들의 권한은 이혼을 했거나, 과부가 된 여자가 만약 친정으로 돌아오거나 또는 재혼을 할 때는 지참금을 가져갈 수 없다는 확고부동한 규정에 의해 법적으로 제약을 받았다.<sup>76)</sup> 그러나 남송대에서는

74) 『名公書判清明集』卷5 戶婚門, 爭業下 「繼母將養老田遺囑與親生女」.

75) 『唐令拾遺』戶令 第27條 「分田宅及財物」.

여성이 이혼을 하거나 개가·귀종할 때 자신의 지참재산을 가지고 가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른 시대보다 유연하였다. 아내가 개가할 때 자신의 지참재산이 절대적으로 남편이나 시댁의 소유가 아니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자식이 없다면 오히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南宋代에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남편이 죽고, 남편을 이을 아들이 있을 경우에 부인은 자신이 시집을 때 가지고 온 지참재산을 가지고 개가할 수 없다는 판결도 보인다. 이로보아 남송대에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남편과 떨어져 살게 되더라도 여성이 지참재산을 소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식의 有無에 따라 달라지게 됨을 알 수 있다.

## V. 死後 持參財産의 歸屬

부부가 百年偕老하여 한 날 한 시에 같이 생을 마감하는 것 만한 축복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부의 사망 시기가 달라 한 명은 꼭 홀로 남겨지게 된다면, 남겨진 사람은 죽은 사람의 인격까지 대표하여 살아가게 된다. 남편이 생존해 있는 동안 아내의 인격은 남편의 그늘에 가려 없는 것과 같지만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남편의 인격이 아내에 의해 대표된다. 아내의 지참재산 역시 남편 쪽의 전래재산과 합쳐지며, 아울러 남편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남편, 그리고 남편의 사망 후에는 아내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된다.<sup>77)</sup>

그러나 반대로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사망하였을 때, 아내가 가지고 온 지참재산의 귀속문제는 그리 간단히 정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률에서는 아내의 사망 후에 아내가 가지고 온 지참재산의 처리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정해 놓지 않아 지참재산을 둘러싼 분규는 계속되었기 때문이다.<sup>78)</sup> 보통 아

76) Holmgren, Jennifer, *Widow Chastity in the Northern Dynasties: The Lieb-nu Biographies in the Wei-shu*(Paper on Far Eastern History 23, 1981).

77) 滋賀秀三, 앞의 책, 506면.

78) 高橋芳郎, 「妝奩是誰的東西-以南宋爲中心」, 『중국사학회 제9회 국제학술대회논문집』(2008).

내가 사망하였다 해도, 아내의 친가에서는 일단 주어버린 지참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되어 있었다. 唐令應分條에 “妻家所得之財, 不在分限”이라는 글 아래에 특별히 “妻雖亡沒, 所有資財及奴婢, 妻家並不得追理”라는 註를 두어 이를 명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아내의 사망 후, 지참재산의 귀속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니 이것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판관들은 법 집행과정에서 사적인 감정이나 人情에 빠져 자율적으로 판결을 하기도 하였다.<sup>79)</sup> 그로 인해 실제로도 부인 死後, 지참재산 귀속에 대한 여러 가지 판결 사례<sup>80)</sup>가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내가 죽은 후에 지참금은 일반적으로 남편 쪽의 전래 재산과 합체하여 하나를 이루며 남편이나 자식에게 전해졌다. 그러나 어떤 여성들은 지참금의 처분에 대해서 희망하는 바를 확실히 표시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趙氏는 臨終시에 며느리에게 “나의 보물 상자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내가 지참금으로 가지고 온 것이다. 나는 단 하나의 물품도 내가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한 것은 없다. 나는 모든 지참금을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유언을 남겼다.<sup>81)</sup> 즉, 그녀 자신의 자손들만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지참금을 맡았을 때, 아내가 탐탁지 않게 여겼던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유언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보통 아내의 지참금은 남편과 자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때, 남편의 자손이라 해서 반드시 재산을 지참한 해당 아내가 낳은 자손만 있는 게 아니다. 전통 중국사회의 혼인제도는 일부일처의 단혼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sup>82)</sup> 실질적으로는 첩을 인정하는 ‘一夫一妻多妾制’였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복아들이 있다는 것이 본처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sup>83)</sup> 이런 현실에서 아내가 죽은 후 그녀의 지참재산은 무차별적으로 여러 아들들에게 균분되어야 하는지, 또는 아내

79) 高楠, 「南宋母親身後的遺産歸屬」, 『廣西社會科學』 12(2006).

80) 滋賀秀三, 앞의 책, 511면.

81) P. B. Ebrey, 앞의 책, 184면.

82) 島田正郎, 임대희·박원길·우덕찬·이광수 옮김, 『아시아법사』(서경문화사, 2000), 192면.

83) 『家範』 卷10, 「妾」.

가 낳은 자식에게만 독점적으로 전해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는 처의 지참재산 계승에 관한 권한과 소유문제를 처리하는데 적자계승과 서자계승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래의 사료는 처의 死後, 지참재산의 계승에 관하여 嫡子와 庶子가 10년 이상에 걸쳐서 다투고, 이에 관해 6곳에서 나온 판결을 크게 분류한 것이다.

유하반이라는 자에게는 아내 곽씨의 자식인 拱辰, 첩의 자식인 拱禮, 拱武 3명이 있었다. 부부가 사망 후, 유하반 자신의 재산은 세 아들 사이에 균분되었으나, 아내 곽씨의 지참재산인 세액 6관문의 전지는 아내의 자식 拱辰이 독점하고 있었다. 공진의 사후, 拱禮, 拱武(그때 이미 사망)의 과부 곽씨(먼저의 곽씨와는 동성인)가 이를 위법이라 하면서 拱辰의 자식 仁謙, 仁愿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후 6개소의 관가에 축소되어 관의 견해도 3종으로 나뉘었다. 즉 ① 아내의 자식이 독점해야 한다 ② 처첩의 아들 수대로 균분해야 한다 ③ 반을 아내의 자식에게 주고, 다른 반은 첩의 자식 2인에게 분여해야 한다. 이리하여 사건이 다시 황문숙공의 법정으로 오게 되었다. 공은 “범으로써 이를 논하자면, 가산분할의 법조 가운데 지참재산을 모두 그 부인의 친자에게 주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또한 지참재산을 부인 명의로 一戶를 세워 거기에 등록함은 불허하며, 남편을 호주로 하는 一戶에 부수되게 등록해야 한다. 요컨대, 남편의 재산이 된다. 남편의 재산이라면 무릇 남편의 자식 된 자는 모두 받을 수 있는 셈이니, 부인의 친자만이 독점해도 될 리는 없다. 이치로써 이를 논하면, 곽씨가 유하반의 아내로 있을 때 적자와 서자가 있더라도 당연히 같은 아들로 간주하였음에 틀림없다. 서출의 아들은 곽씨를 모친으로 여기고, 살아 있는 동안 효로써 봉양하고 죽어서는 애송하여 친모와 다를 바 없었다. 그렇다면 곽씨의 서출 아들 또한 자기의 아들과 같다. 어찌하여 곽씨 사후에, 拱辰만이 그 모친의 지참 토지를 독점하는 일이 허용되는가. 拱辰이 친자이고 拱禮, 拱武가 서자라 해도 그들이 부친에게서 기를 받은 것과 같다. 모친 쪽에서 보면 이복이라 해도 부친 쪽에서 보면 동기다. 拱辰은 부친의 뜻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모친의 지참 토지를 독점한 것이 옳은 것일까. 이렇게 보면 세액 6관문의 토지는 당연히 셋으로 나누어 형제가 균등하게 갖는 것이 타당하다.<sup>84)</sup>

유하반에게는 본처 곽씨가 낳은 拱辰과 첩이 낳은 拱禮, 拱武가 있었다. 유하반과 곽씨가 죽자, 유하반의 재산은 세 아들에게 균분되었지만 곽씨가 시집을 때 가지고 온 지참재산은 곽씨의 嫡子 공진이 가지게 되었다. 이에 拱禮, 拱武(이미 사망)의 과부 곽씨가 이를 위법이라 하면서 공진의 자식 仁謙, 仁愿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官에서는 3가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첫째, 본처인 곽씨의 자식이 곽씨가 가지고 온 지참재산을 독점해야 한다. 이것은 첩의 아들들은 법률상으로 어머니인 곽씨의 지참재산에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지참재산을 처 개인의 재산으로 생각하여 처가 직접 낳은 자식이 지참재산을 계승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둘째, 妻妾이 낳은 것에 상관없이 유하반의 아들 수대로 곽씨의 지참재산을 균분해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는 지참재산을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생각한 것으로, 자식은 똑같이 남편의 자식이고,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므로 남편의 자식 모두에게 균분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판단한 것이다.

셋째, 곽씨가 가지고 온 지참재산의 半은 곽씨의 자식인 공진에게 주고, 나머지 半은 첩의 자식인 공예와 공무에게 분여해야 한다. 이는 첫 번째·두 번째 견해의 절충안으로 원칙을 굽혀 세속의 사정에 맞춘 것인데, 적자와 서자가 곽씨의 지참재산을 2대 1의 비율로 계승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맡은 黃幹은 “가산분할의 法條 가운데 지참재산을 모두 그 부인의 親子에게 주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혼인을 통해 곽씨의 지참재산은 유하반의 재산이 되었으므로 유하반의 재산은 유하반의 자식 모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아내의 토지가 남편의 재산이라는 것 이외의 다른 생각에 반대한 것이다. 즉 황간은, 자식은 똑같이 남편의 자식이고, 재산은 전부 남편의 재산이므로 이론상으로는 두 번째 견해가 정당한 것으로 봄으로써 여성의 재산권을 좀 더 제한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

84) 『黃文肅公文集』 卷40, 「郭氏劉拱禮訴劉仁謙等冒占田産」.

은 첫 번째 견해에 비해 ‘甚廣·甚公’하다하면서, 천하의 公理를 다하기보다 세속의 私情으로 曲盡하여 세 번째 견해로 결론이 났다.<sup>85)</sup> 문제는 실제로 상당히 미묘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지참재산도 특별취급을 받지 않고 남편의 재산과 합쳐져 자신의 親子 有無에 상관없이 남편의 아들들에게 똑같이 균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鄭氏는 전 남편 肅氏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 肅眞孫을 데리고 姚岳에게 개가하였다. 정씨와 요악이 죽자 숙진손은 자신의 이름을 요송이라 속이고 요악의 재산을 약탈하기 시작하였는데, 요악의 親子인 姚虞佐가 이를 관에 고소했다. 判官은 숙진손에게 요악 家의 재산을 강제 반환시키고, 특히 鄭氏가 요악과의 혼인 때 지참한 모든 화장도구와 옷가지 등을 요악의 친 아들 요우좌에게 보이고 그 半분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있다.<sup>86)</sup>

이때의 경우, 사건의 핵심은 隨母嫁子<sup>87)</sup>인 숙진손이 繼父 요악의 재산을 전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판결을 보면 정씨의 지참재산을, 後夫人 요악의 친자 요우좌에게 그 半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있는데, 이는 정씨 사후에 지참재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잘 알려준다 할 수 있다. 요우좌와 숙진손은 이복형제로 정씨가 요악에게 개가하면서 형제로 맺어진 사이다. 이에 判官은, 再婚을 통해 요우좌의 자식인 요악이 정씨의 자식이 되었으므로 그녀의 지참재산을 정씨의 친자인 숙진손과 요악의 자식인 요우좌에게 1대 1의 비율로 계승하도록 하였다. 결국 앞 사례에서 황간이 내린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85) 『黃文肅公文集』 卷40, 「郭氏劉拱禮訴劉仁謙等冒占田產」.

86) 『名公書判清明集』 卷7 戶婚門, 義子「義子包併親子財物」.

87) 재혼하는 모친을 따라간 자식에 대한 표현으로 『清明集』 卷7 戶婚門에는 ‘義子’, 『宋會要』에는 ‘隨母男’이라 되어 있다. 이들은 모친이 재가하여 가서 새로 맞이한 남편[後夫]을 ‘繼父’, ‘義父’라 하였다. 隨母嫁子에 대한 사례로는 『名公書判清明集』 卷4 戶婚門, 爭業上「隨母嫁之子圖謀親子之業」; 卷4 戶婚門, 爭業上「羅械乞將妻前夫田產沒官」; 卷7 戶婚門, 義子「義子包併親子財物」; 卷8 戶婚門, 歸宗「子隨母嫁而歸宗」; 卷8 戶婚門, 歸宗「出繼不肖官勒歸宗」; 卷9 戶婚門, 違法交易「鼓誘寡婦盜賣夫家業」; 卷10 人倫門, 兄弟「與義兄爭業」; 卷12 懲惡門, 姦穢「土人因姦致爭既收坐罪名且寓教誨之意」가 있다.



여성이 남편보다 먼저 사망하여, 그녀가 남긴 지참재산이 누구에게 전승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사례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처는 자기가 죽은 후, 자기의 재산을 전적으로 자기의 아들에게만 돌아가기를 원했을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분할 시 고려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혼인을 통해서 남편의 자식은 적자·서자의 구분 없이 부인의 자식이므로 부인의 재산은 똑같이 남편의 자식에게 균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첫 번째 혼인이 실패하여 改嫁로 이어지더라도 그 때 지참한 재산 역시 남편의 전래 재산과 합쳐지게 된다. 그리고 처 사망 후에는 특별히 後夫의 아들도 그 지참재산의 계승에 동참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母의 지참재산이 확고하게 모친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음이 인정되어 死後에 자식에게 전래되었다기보다는 父母財産의 의미로서 자식들에게 전해졌다고 볼 수 있겠다.

## VI. 맺음말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父系 중심의 가족제도와 그를 뒷받침하는 유교 이념이 강고하게 지속되었지만 다른 한편, 딸이 부모로부터 재산상의 지원을 받는 것 역시 지속적인 관행이었다. 딸들에게 부모의 재산이 전승되는 경로는 가장 일반적으로 혼인을 위한 지참금을 통해서였고, 성리학이 부흥했던 宋代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오히려 지참금에 대한 여성의 권리와 분량이 증대된 특징을 보이고 더 나아가 딸이 남자 형제와 가산 분할에 있어 절반을 받는다는 어느 시대에서도 볼 수 없었던 법령까지 발효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고 송대 딸과 아내의 재산권에 대해 양분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sup>88)</sup>

88) <표 1> 송대 딸과 아내들의 재산에 대한 권리

지금까지 지참재산 액수의 급상승으로 나타난 여성의 권리와 소유권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唐代까지는 聘財, 즉 남자 측에서의 결혼 재정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많았다면, 宋代는 여자 측에서의 비용 즉 지참재산의 부담이 더 커졌던 경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과거제도에 의한 개인 능력의 중시와 화폐 상업경제의 발전 속에 지참금이 사회적 출세와 경제적 수익을 줄 수 있는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참재산에 대한 여성의 소유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던 바를 정리함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宋, 특히 南宋代에 많은 양의 지참금을 준비해야 된다는 압력의 증대로 부모들은 딸을 위해 지참재산을 준비하고 마련하는데 열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딸들 또한 자신의 지참재산을 가지는데 소홀하지 않았고, 이것을 가지는데 침해를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자신이 혼인하기 전에 부모가 사망하게 되더라도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법적 장치로 인해, 부모님이 죽기 전에 자신에게 남긴 지참재산을 다른 방해 요소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나 혼인이 이루어지고 난 뒤, 부부간의 관계에서 지참재산은 다른 문제

송대 딸들과 아내들의 재산에 대한 권리 약화 주장		송대 딸들과 아내들의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 지지	
滋賀秀三	과부가 수절하지 않고 개가할 때는 지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하였음. 다만 南宋 시기에는 법률로 명확하게 이를 명시하지 않았음	仁井田陞	南宋시기 여성이 상당한 지위를 가지는데 이것은 지참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
朱瑞熙	지참재산 소유권한이 당대에 비해 복송이, 복송에 비해 남송이 낮아짐. 청대 여성의 지참재산 토지는 남편소유	柳田節子	남편 사망 후 처가 재혼할 때 처 명의의 전답을 가져가는 것이 가능
郭麗冰	혼인후 시택을 상대로 지참재산에 대한 권한 가지나 남편에게 지참재산 권한이 넘어감	永田三枝	남송대 여성의 재혼 때 지참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원대 이후에 금지
王墨	주자학의 영향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함	板橋眞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처 명의로 된 계약서의 법적 유효성을 의심할 여지는 없음
高楠	여성의 지참재산은 시택의 가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이지만 부부사이에서는 남편이 소유하는 경향이 강함	高橋芳郎	지참재산은 처 개인의 특유 재산으로 처가 개가·귀종할 때 지참재산을 지참할 수 있음

를 낳았다. 아무리 처가 자신이 가지고 온 지참재산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유교적 질서와 원리가 강한 시대적 상황에서 여성의 지참재산은 효과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宋代의 혼인생활에서 남편은 아내의 법적인 대표자이자 주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생활이 존속되는 동안 지참재산에 대한 아내의 권리는 남편에게 흡수되었고, 지참재산의 명기도 남편의 이름으로 하였다. 이는 아내가 가지고 온 지참재산이 남편의 소유가 된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처는 자신이 가지고 온 지참재산을 남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도 나타내지 못했고, 심지어 자신의 지참재산을 사용하는데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처의 지참재산은 남편과 그 부모 형제를 포함하는 家에 대해서는 私財로 인식되었다. 同居共財의 원리에서 처가 시집을 때 가지고 온 지참재산은 시부모나 다른 傍系 가족들이 있다 하더라도 家産分割의 항목에서 제외되었고, 남편과 처, 자녀로 이루어진 독립가정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

그렇지만 離婚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정은 또 달라졌다. 여자에게 이혼의 원인이 있다면 다른 어떤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처가 가지고 온 지참재산도 남편의 소유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만약 남편이 죄를 범해 編管되거나 외향에 나가 아무 이유 없이 3년 동안 연락이 없다면 처는 시집을 때 가지고 온 재산을 가지고 이혼할 수 있었다.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보통 이혼은 남편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약자에 선 아내는 지참재산을 가지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고 있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남송대에 나타난 특징인데, 이혼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는 하지만 그 원인 제공의 여하에 따라서 여성이 지참재산을 가지고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南宋代에서는 과부가 수절하지 않고 歸宗하거나 改嫁하게 되면 자신의 지참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어 많은 혼란이 있었다. 우선 前夫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다면 지참재산을 가지고 개가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이를 책망해서도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식이 있다면 지참재산을 가지고 개가하거나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不許하고 있다.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다는 도리에 의해 결혼지참금으로 가져온 재산도 역시 아들에게 전승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여성이 개가할 경우에는 전부와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지참재산 소유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 사후의 지참재산의 귀속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편이 생존해 있는 동안은 남편의 그늘에 가려 살아가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부인은 남편의 인격까지 대표하여 살아가게 된다. 자신의 지참재산 역시 남편의 사망 후에는 자신의 관리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남편보다 처가 먼저 사망하였을 때 지참재산의 귀속 문제는 상황을 따져 보아야 한다. 보통은 남편과 지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고, 특별히 처는 자신의 지참재산이 전적으로 자기의 아들에게만 돌아가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다처제의 문화에서 남편에게 처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닌 庶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참재산을 균분 할 때는 적자, 서자 간에 갈등이 있었다. 이에 南宋代 대표적 유학자 주희의 제자인 黃幹은, 혼인을 통해 부부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부인의 재산은 남편의 재산이 되고, 남편의 자식이라면 똑같이 처의 자식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적자, 서자 구분 없이 처의 지참재산을 균분해서 나누어 주라고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여성이 前夫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을 데리고 개가하였을 경우에도 여성의 死後, 지참재산은 자신의 아들 뿐 아니라 後夫의 아들에게까지 나누어 주라고 하였다. 이는 여성의 지참재산에 대한 권리가 다른 어떤 상황보다 부부 사이에서는 확실히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참재산은 母의 財産이라기 보다는 父母財産으로 인정되어 자식에게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중국의 가족제도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었다. 특히, 여성의 지참재산 소유문제와 관련된 관념적인 유교원칙은 가부장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사회 속의 실제 관행과 큰 괴리를 보여주며 변화했다. 그리고 南宋代 여성의 지참재산 소유권에 대한 많은 분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참재산은 여성의 권리 신장 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특유재산임에는 틀림없다. 그렇지만 지참재산의 소유를 통한 여성의 권리 변화가 남송 대에 나타난 다른 사회 변화보다 현실적으로 확고하게 정착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父系 중심, 父權 중심, 媿家 중심의 유교적 이상 속에서 여성의 지참재산은 독립적인 의미보다는 남편의 품 안에서 지켜진 소극적 의미의 소유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지참재산에 대한 여성의 주체적 권리를 말하기에는 유교예법의 관념이 강한 현실의 압박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 ■ 참고문헌

### 1. 史料

- 『家範』, 上海人民出版社, 1998.
- 『慶元條法事類』, 上海古籍出版社, 1995.
- 『戒子通錄』, 商務印書館, 發行年未詳
- 『唐律疏議』, 中華書局, 1985.
- 『名公書判清明集』, 中華書局, 1987.
- 『司馬氏書儀』, 中華書局, 1985.
- 『宋史』, 中華書局, 1995.
- 『宋刑統』, 法律出版社, 1999.
- 『禮記』, 修文書館, 1983.
- 『袁氏世範』, 藝文印書館, 發行年不明.
- 『儀禮』, 廣陵書社, 1983.
- 『左氏春秋傳』, 上海古籍出版社, 1998.
- 『漢書』, 中華書局, 1996.
- 『黃文肅公文集』, 藝文印書館, 發行年不明.
- 『後村先生大全集』, 商務印書館, 1929.

## 2. 著書

- Birge, Bettine, *Woman, property, and confucian reaction in Sung and Yuan China(960~1368)*,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Goody Jack, 연국희·박정혜 옮김, 『중국과 인도의 결혼 풍습 옛보기』, 중앙M&B, 1999.
- Holmgren Jennifer, *Widow Chastity in the Northern Dynasties: The Lieh-nu Biographies in the Wei-shu*, Paper on Far Eastern History 23, 1981.
- Hsiao-Tung, *Peasant life in China: a field study of country life in the Yangtze Valley*, Oxford University Press, 1946.
- Kathryn Bernhardt, *Woman and Property in China, 960~1949*, Stanford Univ. Press, 1999.
- Klapisch-Zuber, Christiane, *A history of women in the West*,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1994.
- P. B. Ebrey, 배숙희 역, 『중국여성의 결혼과 생활—송대 여성을 중심으로—』, 三知院, 2000.
- 大澤正昭, 『主張する‘愚民’たち』, 角川書店, 1986.
- \_\_\_\_\_, 『南宋の裁判と女性財産權』, 青木書店, 2000.
- 島田正郎, 임대희·박원길·우덕찬·이광수 옮김, 『아시아법사』, 서경문화사, 2000.
- 董家遵, 『中國婚姻史』, 廣東人民出版社, 1998.
- 徐揚杰, 윤재석 옮김, 『中國家族制度史』, 아카넷, 2000.
- 柳田節子, 『宋元社會經濟史研究』, 創文社, 1994.
- 仁井田陞, 『支那身分法史』, 東方文化學院, 1942.
- \_\_\_\_\_, 『中國法制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61.
- \_\_\_\_\_, 『中國法制史研究 家族村落法』, 東京大學出版會, 1962.
- \_\_\_\_\_, 『唐令拾遺』, 東京大學出版會, 1964.
- 滋賀秀三, 『中國家族法の原理』, 創文社, 1967.
- 朱瑞熙, 『宋代社會研究』, 中州書畫社, 1983.
- 中國農村慣行調查刊行會, 『中國農村慣行調查』, 岩波書店, 1953.
- 中華民國司法行政政府, 『民事習慣調查報告錄』, 中華民國司法行政政府 印行, 1930.
- 陳顧遠, 『中國婚姻史』, 上海書店, 1987.
- 川村康, 임대희 옮김, 『宋代에 있어서의 養子法』, 서경, 2005.

板橋眞一, 『柳田節子先生古稀記念中國の傳統社會と家族』, 汲古書院, 1993.

邢 鐵, 『家産繼承史論』, 云南大學出版社, 2000.

洪 邁, 임국웅 역, 『경세지략』, 넥서스, 2003.

박영철, 『명공서판청명집-호훈문 역주』, 소명출판, 2008.

이화여자대학교 중국여성사연구실, 『중국여성, 신화에서 혁명까지』, 서해문집, 2005.

전경옥, 『열린중국, 닫힌중국』, 문학세계사, 1999.

### 3. 論文

高橋芳郎, 「親を亡くした女たち-南宋期のいわゆる女子財産權について」, 『東北大學東洋史論集』 6, 1995.

\_\_\_\_\_, 「名公書判清明集」, 『法史學研究』 27, 2003.

\_\_\_\_\_, 「妝奩是誰的東西-以南宋爲中心」, 『중국사학회 제9회 국제학술대회논문집』, 2008.

高 楠, 「宋代家庭中的奩産紛糾」, 『中國社會經濟史研究』 3, 2004.

\_\_\_\_\_, 「南宋母親身後的奩産歸屬」, 『廣西社會科學』 12, 2006.

\_\_\_\_\_, 「宋代家庭中的共有財産紛糾」, 『中國社會歷史評論』 8, 2007.

郭麗冰, 「宋代婦女奩産權的探求」, 『廣東衣工商職業技術學院學報』 21, 2005.

大澤正昭, 「劉後村の判語-『名公書判清明集』と『後村先生大全集』」, 『중국사연구』 54, 2008.

勝山稔, 「宋元代の聘財に關する一考察; 高額聘財の推移から見る婚姻をめぐる社會」, 『中央大學文學部アジア史研究』 22, 1998.

辻正博, 「宋代編管制度考」, 『東洋史研究』 61-3, 2002.

永田三枝, 「南宋期における女性の財産權について」, 『法制史研究』 42, 1992.

王 墨, 「淺論宋代婦女的社會地位」, 『廣東民族學院學報』 11, 社會科學版, 1988.

袁 俐, 「宋代女性財産權述論」, 『宋史研究集刊』 2, 1998.

柳田節子, 「宋代女子財産權」, 『法政史學』 42, 1990.

中田薰, 「唐宋時代の家族共產制」, 『法制史論集』 3, 1943.

姜希受, 「宋代의 女性 財産權에 대한 研究動向」, 『중국사연구』 17, 2002.

- 남은혜, 「宋代 家族制度에 대한 연구동향」, 『법사학연구』 38, 2008.
- 朴志焄, 「宋代 士大夫의 女性觀—家訓書를 中心으로—」, 『중국학보』 46, 2002.
- 배숙희, 「南宋代 江南 家庭生活의 이상적인 모습—『袁氏世範』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55, 2007.
- 우성숙, 「『名公書判清明集』을 통해 본 宋代 女性의 再婚과 財産問題」, 『法史學研究』 31, 2005.
- 陸貞任, 「宋代 딸의 相續權과 法令의 變化」, 『이화사학연구』 30, 2003.
- \_\_\_\_\_, 「宋代 分割相續과 家族」, 『동양사학연구』 83, 2003.
- 任大熙 외, 「『清明集』 「호혼문」 卷四」, 『중국사연구』 33, 2004.
- \_\_\_\_\_, 「『清明集』 「호혼문」 卷五」, 『중국사연구』 34, 2005.
- \_\_\_\_\_, 「『清明集』 「호혼문」 卷六(上)」, 『중국사연구』 37, 2005.
- \_\_\_\_\_, 「『清明集』 「호혼문」 卷六(下)」, 『중국사연구』 38, 2005.
- 任大熙·朴政澈, 「『清明集』 「호혼문」 卷七(上)」, 『중국사연구』 41, 2006.
- \_\_\_\_\_, 「『清明集』 「호혼문」 卷七(下)」, 『중국사연구』 42, 2006.
- \_\_\_\_\_, 「『清明集』 「호혼문」 卷八」, 『중국사연구』 47, 2007.
- 任大熙, 「『清明集』 「호혼문」 卷八(中)」, 『중국사연구』 55, 2008.



<Abstract>

## Actual Conditions of Woman's Bringing Property Possession in Southern Sung Era\*

Nam, Eun-Hye\*

Woman wishes to recognize that woman's property rights was in some position on Southern Sung era society by examining possession actual conditions of taking bringing property at marriage as do precedent that appear to 『Ming-kung shu-p'an ch'ing-mingchi』 that is law report in China Southern Sung era latter half of 13th century after it is original to the center.

When daughter gets married if is Southern Sung era, daughter prepared much at family with daughter for bringing property that take. Because bringing property was big help in daughter's property formation after is soul. Specially, when bringing property divides addition in esteemed family of your husband after is soul, discord appeared much with esteemed family of your husband family to brings important meaning into excepted property, and holds this property.

In Southern Sung era, woman gets divorced or when a dog does, whether must see bringing property as woman's possession or must see as husband's possession, caused confusion because there is no definite law regulation. Also, red and child born of a concubine's discord that enclose bringing property woman after one's death

---

\* Histor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Im, Dae-Heui)

appeared.

**[Key Words]** bringing property, marriage, possession, divorce, remarriage, after one's death

접수일 : 2009.8.7, 심사일 : 2009.9.24~10.5, 게재확정일 : 2009.10.12